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55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이탄희·강득구·강민정

권인숙 · 김교흥 · 김민기

김민철 · 김영호 · 김진표

김철민 • 도종환 • 류호정

민병덕 · 서동용 · 용혜인

윤미향 • 이용빈 • 이용우

이형석 · 임종성 · 임호선

전용기 · 주철현 · 천준호

최기상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매연을 유발하거나, 특고압 전기시설을 동반하는 기반시설로 인해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 보호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 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본문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를 "구역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시설"을 "시설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를 "구역내에서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 2. 특고압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파 발생 우려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제9조 각 호의"를 "제9조의"로,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를 "시설(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시설에"를 "시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⑦ (생 략)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	<u> </u>
<u>육환경보호구역 내</u> 금지행위	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	
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교육감은 학교경계등으로부
	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제9조제2항에 따
	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
	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	<u>④</u> <u>제3항</u>

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 3.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지적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u></u>
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
<u> </u>
 구역이
1. ~ 3. (현행과 같음)
<u>⑥</u> 제1항 및 제2항
<u>.</u>
·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제9조제1항
<u> </u>
시설 및 같은 조 제2항에
<u>해당하는 시설</u>
<u>구역 내에서의</u>

② (생략) 금지행위 등)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의 금지행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 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 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 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감 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 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기 제2조제5호의 2에 따른 물류창고를 설치하 거나 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특고압 전기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파 발생 우려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u>제9</u>
조 각 호의 행위 및 <u>시설(제9</u>
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
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
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
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 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u>제9조</u> 각 호의 행위 및 <u>시설에</u>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세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제9조		
의시설(제9조제1항 단		
<u>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u>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		
제1항시설과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에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	제16조(벌칙) ①
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